

계약 최저임금법, 저임금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

2018. 5. 2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 작성자 : 이창근 민주노총 정책연구위원 (02-2670-9223)
 - 민주노총 정책보고서는 민주노총 홈페이지(<http://www.nodong.org>)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요약 및 결론>

- 개약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 1배 ~ 1.2배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나, 최저임금법 개약 과정에서 명분으로 삼은 ‘저임금 노동자 보호’는 아무런 실체적 근거도 없는 거짓임이 드러남.
- 저임금 노동자 30%, 즉 10명 중 3명은 새롭게 포함된 「상여금 25% 초과분」과 「복리후생수당 7% 초과분」을 수령하고 있어서, 개약 최저임금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드러남.
- 2019년 최저임금 15% 인상을 가정했을 때, 저임금 노동자 10%, 즉 10명 중 1명은 추가적인 임금인상 없이 개약된 산입범위만으로도 내년 최저임금 이상 노동자가 됨. 이들의 내년 임금은 동결될 수 있음.
- 2019년 최저임금이 15% 인상된다고 가정했을 때, 개약된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1배 ~ 1.2배 저임금 노동자 임금인상 삭감률은 20%에 달함.
- 2019년 최저임금이 15% 인상된다고 가정했을 때, 최저임금 1배 ~ 1.2배 복리후생 수당 수령자의 임금은 기존 산입범위 기준 임금 인상률(8.6%)에 비해 절반이 훨씬 넘는 5.7%p나 대폭 떨어진 2.9%로 하락함. 1달에 약 93,400원의 임금인상 삭감 효과가 발생함.
- 2019년 최저임금이 15% 인상된다고 가정했을 때, 최저임금 1배 ~ 1.2배 상여금 수령자의 임금은 기존 산입범위 기준 인상률(13.4%)에서 0.7%로 떨어짐. 실제 임금 인상률이 거의 제로가 됨. 비록 「상여금 25% 초과분」을 받는 노동자 비율이 「복리후생수당 7% 초과분」을 받는 노동자 비율에 비해 낮은 것은 사실이나,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치명적임.

1. 실태조사 개요

○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1배 ~ 1.2배 저임금 조합원 602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를 진행했으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개악된 최저임금법에 따른 산업범위 효과’를 분석함.

※ 실태조사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민주노총 정책보고서 「최저임금 산업범위 확대 임금삭감 효과 분석」을 참고. http://nodong.org/data_paper/7240028

[표-1] 2018년 저임금 조합원 임금액과 임금 항목별 비중(단위: 원,%)

항목		금액	비중 ¹⁾	
임금총액(초과근로수당 포함)		2,159,722	106	
임금총액(초과근로수당 제외)		2,036,933	100	
기본급		1,654,000	81.2	
기본급+통상수당		1,755,235	86.2	
기본급+통상수당(보정) ²⁾		1,766,758	86.7	
통상수당	소계	100,825	4.9	
	①	직무·직책·직급수당	18,371	0.9
		그 외 통상수당 ¹⁾	922	0.0
	② ²⁾	생산수당	16,595	0.8
		(직무)능력급	64,936	3.2
근속수당		47,715	2.3	
복리후생	소계	136,497	6.7	
	급식비	84,869	4.2	
	통근비	13,406	0.7	
	숙박비	0	0.0	
	가족수당	10,758	0.5	
	학비보조	27,464	1.3	
초과근로수당		122,789	6.0	
연월차수당		61,211	3.0	
그 외 기타수당		55,361	2.7	
상여금	소계	95,834	4.7	
	정기상여금	①매월 1회 이상(월할)	1,548	0.08
		②기타(격월, 분기 등)	24,327	1.2
		①+②	25,875	1.3
	명절상여금	57,657	2.8	
성과상여금	12,303	0.6		

주 1) 비율은 초과근로수당을 제외한 임금총액 대비 상대적 수준임.

2) 지하철 청소용역 노동자의 임금은 2018년 5월 현재 최저임금법 위반임. 다만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이 개정되었으며 현재 임금협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 2~3개월 후 체불임금이 정산될 예정임. 따라서 해당 노동자의 임금을 2018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보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값임.

2. 개악 최저임금법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산입함. 다만 아래의 임금은 예외로 함. △ 소정 근로일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현행) △ 상여금 등 해당년도 최저임금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2024년 일몰) △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 임금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2024년 일몰)
- 이에 따라, 올해 최저임금 월 환산액 1,573,770원 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상여금의 경우 25%인 월 393,400원(백단위 절사), 식대·숙박비·교통비 등 복리후생수당은 월 110,100원(백단위 절사)을 초과하는 금액이 새롭게 산입범위에 포함됨.
- 취업규칙 변경절차 특례 조항을 통해, 1개월 초과 주기 지급 임금을 총액 변동 없이 변경하더라도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아님을 명시함. 과반수 '의견 청취'만으로 가능함.

3. 분석방법

- 개악된 최저임금법에 따른 효과 분석은 최저임금 1배 ~ 1.2배에 해당하는 602명의 저임금 노동자를 대상으로 함. 효과 분석은 2019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15%로 가정하고, 아래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춰 진행함.
- 첫째, 개악된 산입범위에 따라 추가적인 임금인상 없이 최저임금 이상이 되는 노동자 비율. 즉, 임금이 동결될 가능성이 매우 큰 노동자 비율.
 - 산입범위 개악에 따라 임금인상 효과가 상쇄되는 노동자 비율은 기존 산입범위 기준으로는 차기년도 최저임금 미만이지만, 새롭게 개악된 산입범위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이 되는 조합원 비율로 계산함.
- 둘째, 개악된 산입범위에 따라 '기존 산입범위가 유지되었을 때 받을 수 있었던 시급'에 비해 임금인상 금액이 삭감되는 비율.

1) 저임금 조합원이 받는 기타 통상수당으로는 생산(장려)수당(3명), 조정수당(3명), 벽지수당(1명) 등이 있음.
2) 한편 제빵기사와 대형마트 노동자들은 각각 '생산수당', '(직무)능력급'이란 명칭의 통상수당을 지급받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 기본급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임금인상 삭감 효과는 ① ‘기존 산업범위 기준 차기 년도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를 대상으로, ② ‘기존 산업범위 기준 시급 인상액과 개악된 산업범위에 따른 시급 인상액의 격차 총액’을 ‘기존 산업범위가 유지되었을 때 받을 수 있었던 시급 인상금액 합계’로 나눠서 구하도록 함. 이를 임금인상 삭감률도 정의함.

○ 한편 1개월 초과 임금을 과반수 의견청취만으로 ‘매달 지급하는 임금’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해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특례 조항’의 효과를 고려해야 함. 관련 특례 조항이 없는 상황에서도 현장에서는 각종 상여금과 수당 등을 기존 산업범위에 포함시켜 최저임금 위반을 면하려는 사용자들의 행태가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특례 조항’은 사실상 대부분의 관련 임금 항목이 ‘매달 지급하는 임금’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매우 큼. 이를 고려하여, 임금인상 삭감 효과를 분석하도록 함.

○ 응답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평균적인 효과와 더불어, 상여금 및 복리후생 수당 수령자만을 따로 빼서 임금인상 삭감 효과를 계산하도록 함. 이는 자칫 ‘평균’의 함정에 빠져, 당사자들이 실제 당할 불이익의 정도를 낮게 평가할 우려가 있기 때문임. 따라서 본문에서는 「복리후생수당 7% 초과분」 수령자 및 「상여금 25% 초과분」 수령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각각 별도로 분석하도록 함.

4. 분석결과

○ 첫째, 내년도 최저임금 15% 인상을 가정했을 때, 최저임금 1배 ~ 1.2배 이하 노동자 중 ‘개악된 산업범위’에 의해 임금인상이 반감되는 불이익을 당하는 노동자 비율은 거의 30%에 육박함.

- 최저임금법을 개악하면서,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을 댔지만, 이는 사실이 아님. 민주노총이 실시한 최저임금 1배 ~ 1.2배 저임금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저임금 노동자 중 29%는 ‘복리후생수당 7% 초과분’과 ‘상여금 25% 초과분’이 산업범위에 새롭게 포함됨으로써, 임금인상 효과가 삭감되는 불이익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남.

○ 둘째, 내년도 최저임금 15% 인상을 가정했을 때, 최저임금 1배 ~ 1.2배

저임금 노동자 10%는 추가적인 임금 인상 없이 개악된 산입범위 확대만으로도 최저임금 이상 노동자가 되는 것으로 나타남. 즉, 저임금 노동자 10명 중 1명은 내년도 임금이 동결될 가능성이 큼.

- 15% 인상 (시급 8,660원) 되었을 경우 기존 산입범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만자는 97.8%임. 개악된 산입범위(기존 산입범위 + 상여금 25% 초과분 + 복리후생수당 7% 초과분)로 계산하면, 최저임금 미만자는 87.2%로 줄어듦. 양자 간 격차는 -10.6%p임. 이는 저임금 노동자 중 10명 중 1명의 내년 임금은 동결될 수 있음을 의미함.

○ 셋째, 내년도 최저임금 15% 인상을 가정했을 때, 산입범위가 개악됨에 따라 최저임금 1배 ~ 1.2배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삭감률은 약 2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전체 응답자 평균) 내년 최저임금 15% 인상 (시급 8,660원) 되었을 경우 '기존 산입범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를 대상으로, 「기존 산입범위 기준 시급 인상액」과 「기존 산입범위 + 상여금 25% 초과분 + 복리후생수당 7% 초과분 기준 시급 인상액」 간의 격차 총액을 '기존 산입범위가 유지되었을 때 받을 수 있었던 시급 인상 금액 합계'로 나눈 삭감률은 19.8%임.

- (복리후생 수령자 평균) 내년 최저임금이 15% 인상 (시급 8,660원) 되었을 경우, 최저임금 1배 ~ 1.2배 구간에 해당하는 복리후생 수당 수령자 중 '기존 산입범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를 대상으로, 「기존 산입범위 기준 시급 인상액」과 「기존 산입범위 + 상여금 25% 초과분 + 복리후생수당 7% 초과분 기준 시급 인상액」 간의 격차 총액을 '기존 산입범위가 유지되었을 때 받을 수 있었던 시급 인상 금액 합계'로 나눈 삭감률은 64.9%로 나타남. 전체 응답자 평균인 19.8% 삭감률과 비교하면, 그 격차가 45.1%p만 큼이나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2019년 최저임금이 15% 인상된다고 가정하면, 최저임금 1배~1.2배 저임금 노동자 중 복리후생 수당 수령자의 임금은 기존 산입범위 기준으로 8.6% 인상됨. 하지만 개악된 산입범위로 계산하면 실제 임금 인상률은 5.7%p나 대폭 떨어진 2.9%로 나타남. 금액으로 환산하면, 1달에 약 93,400원의 임금인상 삭감 효과가 발생함.

- (상여금 수령자 평균) 내년도 최저임금이 15% 인상 (시급 8,660원) 되었을 경우, 상여금 수령자 중 '기존 산입범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를 대상으로, 「기존 산입범위 기준 시급 인상액」과 「기존 산입범위 + 상여금 25% 초과분 + 복리후생수당 7% 초과분 기준 시급 인상액」 간의 격차 총액을 '기존 산입범위가 유지되었을 때 받을 수 있었던 시급 인상 금액 합계'로 나눈 삭감률은 93.4%로 나타남.

※ 2019년 최저임금이 15% 인상된다고 가정하면, 최저임금 1배~1.2배 저임금 노동자 중 상여금 수령자의 임금은 기존 산입범위 기준으로 13.4% 인상됨. 하지만 개악된 산입범위로 계산하면 상여금 수령자의 실제 임금 인상율은 0.7%로 대폭 떨어져, 실제 임금 인상 효과는 사실상 없어지는 결과가 나타남. 개악된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상여금 25% 초과분」을 받는 노동자 비율이 「복리후생수당 7% 초과분」을 받는 노동자 비율에 비해 낮은 것은 사실이나,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치명적인 것으로 나타남.

5. 결론

○ 개악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 1배 ~ 1.2배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나, 최저임금법 개악 과정에서 명분으로 삼은 '저임금 노동자 보호'는 아무런 실체적 근거도 없는 거짓임이 드러남.

- 저임금 노동자 30%, 즉 10명 중 3명은 새롭게 포함된 「상여금 25% 초과분」과 「복리후생수당 7% 초과분」을 수령하고 있어서, 개악 최저임금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드러남.

- 2019년 최저임금 15% 인상을 가정했을 때, 저임금 노동자 10%, 즉 10명 중 1명은 추가적인 임금인상 없이 개악된 산입범위만으로도 내년 최저임금 이상 노동자가 됨. 이들의 내년 임금은 동결될 수 있음.

- 2019년 최저임금이 15% 인상된다고 가정했을 때, 개악된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1배 ~ 1.2배 저임금 노동자 임금인상 삭감률은 20%에 달함.

- 2019년 최저임금이 15% 인상된다고 가정했을 때, 최저임금 1배 ~ 1.2배 복리후생 수당 수령자의 임금은 기존 산입범위 기준 임금 인상률(8.6%)에 비해 절반이 훨씬 넘는 5.7%p나 대폭 떨어진 2.9%로 하락함. 1달에 약 93,400원의 임금인상 삭감 효과가 발생함.
 - 2019년 최저임금이 15% 인상된다고 가정했을 때, 최저임금 1배 ~ 1.2배 상여금 수령자의 임금은 기존 산입범위 기준 인상률(13.4%)에서 0.7%로 떨어짐. 실제 임금 인상률이 거의 제로가 됨. 비록 「상여금 25% 초과분」을 받는 노동자 비율이 「복리후생수당 7% 초과분」을 받는 노동자 비율에 비해 낮은 것은 사실이나,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치명적임.
-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은 제도 변경이 가져올 저임금 노동자에게 미치는 효과에 대한 어떠한 실태 파악도 없이 진행된 최악의 ‘묻지마 개악’임.